

문서번호	주민생활지원 과-3171
결재일자	2016. 1. 2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통합관리팀장	주민생활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임청숙	심원택	강대형	하철승	01/29 代하철승
협 조				

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
연간 조사 계획

2016. 1. 29.

강 북 구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 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

I 조사개요

- **추진근거**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(확인조사)
동법 시행규칙 제37조(연간조사 계획 수립)
- **조사목적** :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
- **추진방향**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원칙, 필요 시 현장 사실조사
 -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
 - 공적자료에 의해 소득·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주기별 조사

II 조사계획

- **조사대상**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 (2016.1.1일 현재)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8,991가구 13,838명
- **조사내용**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
(63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·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)

-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·취업상태·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에 필요사항
-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건강상태,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

■ 복지대상자 현황

(2016.01월 현재)

연도	총 수급자		일반 수급자		시설 수급자	
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
2016년	8,991	13,838	8,718	13,565	273	273
2015년	7,424	11,431	7,156	11,163	268	268

※ 2015년 대비 총 수급자 가구수 약 21.1% 증가

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로 최저생계비 100%에서 중위소득 29%로 기준변경

■ 조사주체

-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수행하되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와 협조 수행
-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, 구·동 공무원, 복지위원, 동·반장 적극 활용
- 필요시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조사 실시 (시행규칙 제36조)

■ 조사구분 및 일정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 (보장시설수급자 포함)
- 공적자료에 조회 되지 않는 소득·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 (조사주기별)

구분	소득조사대상	재산	부양의무자	비고
연간조사	· 지출실태조사표소득확인자 · 보장기관확인소득산정자, · 사적이전소득부과자 · 의료비공제적용자(6개월이상)	-	· 부양의무자 소명으로 소득에서 차감한 교육·의료비 ·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선보호중인 수급자	
반기조사	· 조건부과제외자 · 조건제시유예자	재산범위 특례자	-	

	· 조건불이행자 등 ·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· 임시일용소득자			
분기조사	-	-	-	개인운영신고 시설 거주자 급여관리(사업팀)
기 타	·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조건 부과제외대상자 기간 경과시	-	-	중점관리 대상자 수시 확인조사

○ 확인조사 일정

일 정	공적자료 (변동.사후)	확인조사 (일용소득 등 국세청 자료)	단주기(월별) (상시소득 50%이상 증감, 연금변동자, 취득세 납부자)
상반기	2016. 1월 ~ 6월	2016. 3월 ~ 6월	1월, 2월
하반기	2016. 7월 ~ 12월	2016. 9월 ~ 12월	7월, 8월

Ⅲ 조사결과 조치사항

■ 결과조치

- 수급자격 적합시 계속 보호, 소득 및 재산변경에 따른 소득인정액 반영
- 각 사업별 보장중지·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----통합관리팀, 각 사업과
- 급여변동 안내, 필요서류 징구 등 대민접촉 업무----통합관리팀, 동
- 수급자격 부적합시 이의신청절차 안내 후 즉시 보호중지 및 부정 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징수 여부 검토 후 행정절차 수행(생활보장팀)
-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방안 적극 활용
- 보호중지 시 사례관리, 타법 및 서울형 기초생활보장등 적극 연계

Ⅳ 행정사항

-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(반상회보,홈페이지, 리플렛등을 통한) 및 적극적인 발굴 추진(생활보장팀)

- 조사수행에 따른 지침 및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교육 강화 (통합조사·관리팀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대상자에 대한 인적변동, 제도확대 등이 있을 시 재신청 안내(생활보장팀)